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부산광역시

1. 채용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계급	채용분야	인원(명)			시험과목
			계	남	여	
총계			210	184	26	
공개경쟁채용	소방	소방	105	95	10	필수(3)-국어, 한국어, 영어 선택(2)-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소방관련학과	15	11	4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사	구조	31	31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일반	4	4		
		수난	4	4		
		구급	40	32	8	
		차량정비	2	2		
		선박(소방정)	5	5		
		항해기관	3	3		
지방소방교	구급상황관리사	2		2		
지방소방장		1	1			

2.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4. 10(금)		4. 18(토)	4. 29(수)
체력시험	4. 29(수)		5. 6 ~ 8 (3일간)	5. 12(화)
신체·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5. 12(화)		5. 14 ~ 15 (2일간)	5. 21(목)
면접시험	5. 21(목)		5. 26 ~ 29 (4일간)	6. 3(수)

* 시험시행 일정별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성적 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5일간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기간

- 접수기간 : 2015. 3. 16(월) ~ 20(금) 09:00 ~ 21:00 (취소기간 : 2015. 3. 16(월) ~ 27(금) 09:00 ~ 21:00)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단체별 상세안내)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나. 응시원서 사진 안내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에 3.5cm × 4.5cm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응시원서에 등록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

다. 유의사항

- 접수기간내에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종료후에는 불가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 응시표 출력은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1.1.~1994.12.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1.1.~1995.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①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중 **소방관련학과, 차량정비, 구급상황관리사**
 - 2015.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5.01.0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② **경력경쟁채용** 중 **구조, 구급**
 - 2015.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5.01.01 이전까지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③ **경력경쟁채용** 중 **소방정(선박) : 거주지 제한 없음**

라.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력경쟁채용 자격 및 경력**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구조(일반)	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부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구조(수난)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소방관련학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를 졸업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2 소방관련과목(36과목)을 당해 학과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소방관련 전공 36과목)
항해사기관사	4급 이상 의 항해사·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 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차량정비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⑧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조교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경쟁채용 중 구급상황관리사

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공통자격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지방소방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3급 이상 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 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 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 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바. 체력시험 합격기준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되,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함.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자격제한 중 운전면허 및 분야별 자격제한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기준이며,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합니다.
- 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과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라.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사.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씨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지정기일에만 실시하며, 서류전형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차.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 및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카.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51-76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